

25년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 사전 안내

I 추진개요

□ 사업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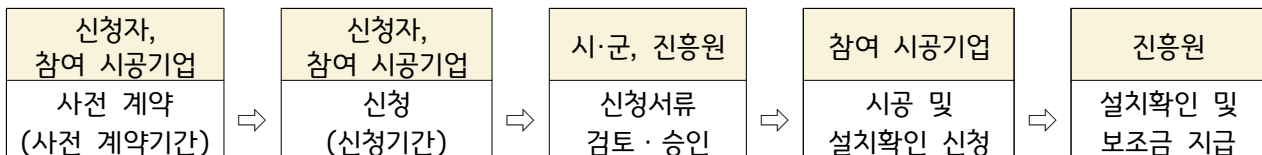
- 사업예산 : 10,657.5백만원
- 지원대상 : 경기도 내 단독주택 소유자
- 지원내용 : 1가구당 주택 태양광(3kW) 설치비의 30~50% 도비 지원
- 지원규모 : 4,953가구

□ 세부사업별 지원방안

구 분	가구 수	총 설치비	지 원 금 (1 가구 당)				자부담
			소 계	국비	도비	시·군비	
도-시군연계	1,690	4,931천원 (100%)	2,465천원 (50%)	-	1,479천원 (30%)	986천원 (20%)	2,466천원 (50%)
도 단독일사납	2,263	4,931천원 (100%)	2,465천원 (50%)	-	2,465천원 (50%)	-	2,466천원 (50%)
도 단독분할납	1,000	4,931천원 (100%)	1,972천원 (40%)	-	1,972천원 (40%)	-	2,959천원 (60%)
합계	4,953						

※ 도-시군연계 사업 시군비 지원 금액 시군별 상이

□ 추진절차



□ 주요 일정 ※ 세부일정 변경될 수 있음

- (03. 28.) 사업 사전 안내, 도 단독_분할납 사업자 모집 공고
- (04. 04.) 경기도 주택 태양광 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오픈
- (04. 21.~) 사업 공고, 회원가입(참여 시공기업, 신청자)
- (5월 ~) 사전 계약, 신청, 검토/승인, 시공, 설치확인 및 보조금 지급

II

유의사항

※ 최종 확정내용은 공고문 참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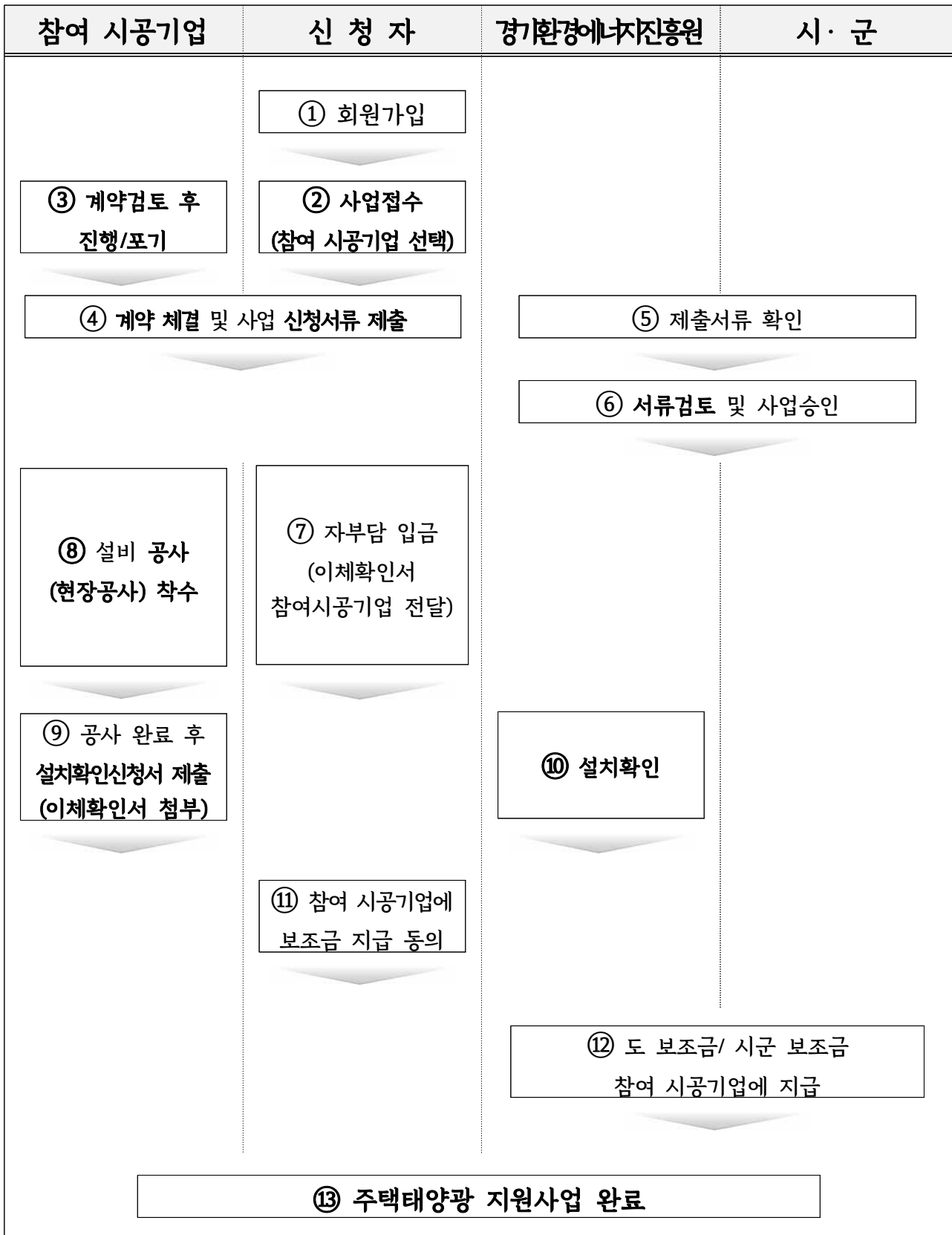
- 참여 시공기업은 '25년 에너지공단 참여기업으로 한정, 사업별로 일부 상이

도-시군연계	도 단독-일시납	도 단독-분할납
에너지공단 참여기업 (경기도 소재, 본사 기준)	에너지공단 참여기업 (전국)	에너지공단 참여기업 (10개 별도 모집 및 선정)

- 참여 시공기업은 누리집에 회원가입 필수 (04.21.~)
- 주요자재(모듈, 인버터)는 신재생에너지 인증제품, 조달청 등록제품을 사용
○ “저탄소모듈” 의무 사용 (탄소배출량 670kg·CO₂-eq/kW 이하)
- 신청기간에는 신청자와 참여 시공기업 계약 체결 불가
○ 사전 계약기간 내에 계약 체결을 완료하여야 신청서 제출 가능
- 경기도 주택태양광 대상자 선정은 서류검토를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
○ 사업포기로 발생한 잔여물량 발생 시, 별도 추가 공고 예정
* 도-시군연계 사업은 해당 시군의 잔여물량 만큼 추가 모집
- 타 지원사업(에너지공단, 경기도)과 중복지원 불가
- 경기도 보조금은 참여 시공기업에게 지급 (신청자 동의 필수)
○ 시군 보조금 수령 주체는 시군마다 상이할 수 있음 (참여 시공기업 또는 신청자)
- 참여 시공기업은 신청자의 자부담금 이체확인서를 제출
○ 태양광 설비 준공 후 자부담금 이체확인서를 포함하여 설치 확인을 신청
- 사업 승인 후, 60일 이내 설치확인 신청
○ 단, 부득이한 경우 1회 연장 가능 (기축은 30일, 신축은 60일까지 연장)
○ 최대 10월까지 설치확인 신청 필수
- 사업 참여를 위해 신청자는 경기도 RE100인정서(G-REC) 동의서 제출
○ 도 단독-일시납, 도 단독-분할납 사업만 해당 (도-시군연계 사업은 제외)
○ 참여 시공기업은 RTU 함체와 함께 태양광 설치 (RTU는 지정업체 별도 설치)
* RTU 함체 규격, 설치 방법 등 별도 안내 예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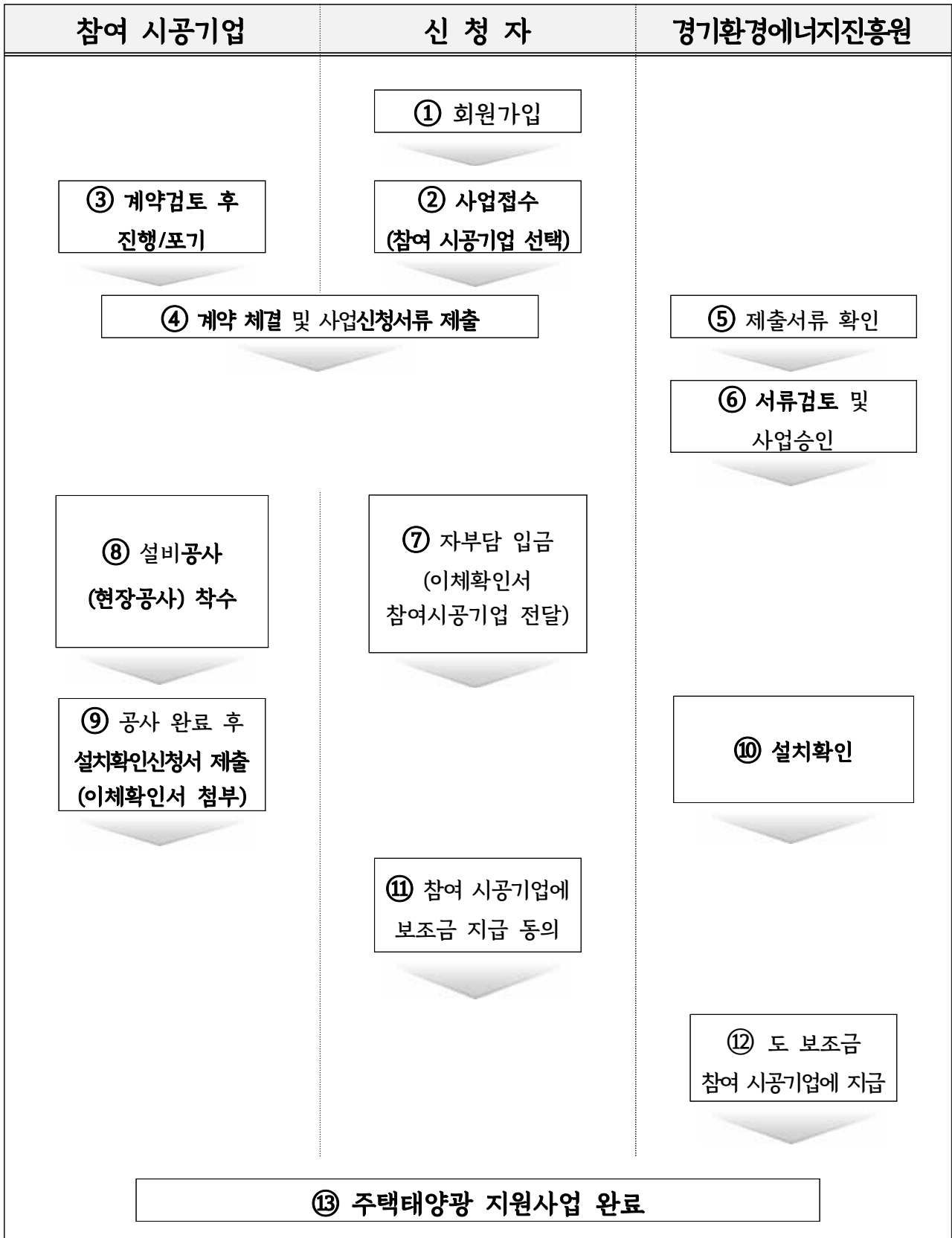
참고 1

(도-시군연계) 지원절차 안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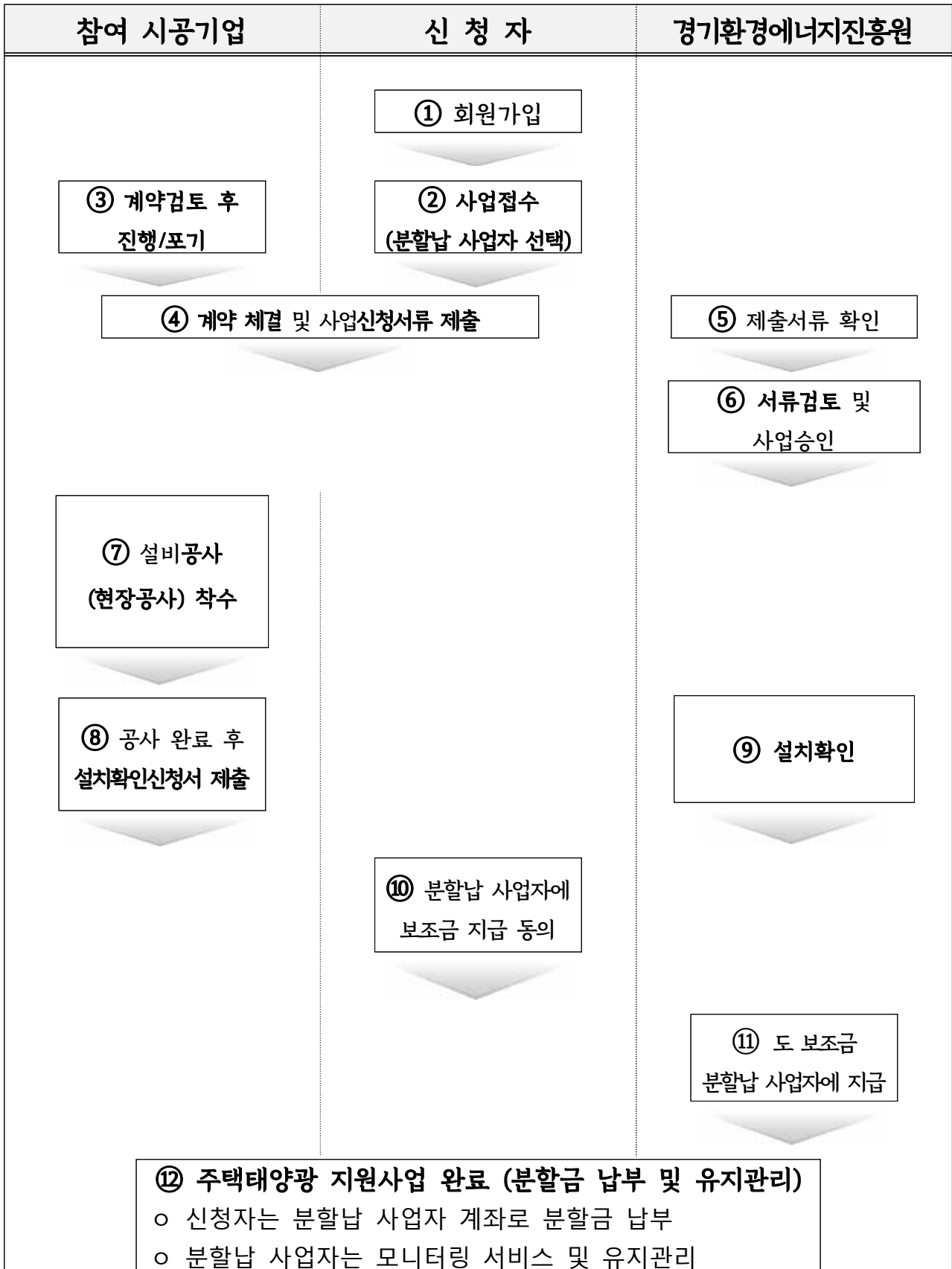
참고 2

(도 단독-일시납) 지원절차 안내



참고 3

(도 단독_분할납) 지원절차 안내



□ [가칭]경기도 재생에너지 인증서 인증서(G-REC)란?

- 국내 최초로 자가소비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기를 확인하는 인증서로, 1 MWh 발전량을 기준으로 정수 단위로 발급할 예정입니다.

※ 3kW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G-REC 연간 발급 수량 ☞ 연 3~4개 예상

- 발전 시간 및 설비 효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

• 일 평균 발전시간 3.5시간 ☞ G-REC 3개 / 발전시간 3.8시간 ☞ G-REC 4개

- 연간 발전량 = 설비용량 3kW × 발전시간 3.5시간 × 365일 = 3,832.5kWh ≒ 3.8 MWh

- 연간 발전량 = 설비용량 3kW × 발전시간 3.8시간 × 365일 = 4,161kWh = 4.1 MWh

□ 추진 배경

- 도내 수출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알이백(RE100)*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, 현재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(REC) 발급 제외 대상인 자가소비형 태양광의 발전량을 인증하고자 합니다.

* RE100(Renewable Electricity 100%)이란,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%를 태양광·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.

□ 시범사업 개요

- 사업대상 : 2025년 도비 지원 주택태양광(3kW) 설치 가구
 - ※ 도_단독 일시납, 도_단독 분할납 사업만 해당 (도-시군 연계사업 제외)
- 사업내용 : 원격모니터링설비(RTU) 설치 후 G-REC 발급·거래
 - 태양광 시공과 별개로 RTU 전문업체에서 RTU 설치 예정
 - ※ 설치비, 통신비 등 필요한 비용은 향후 G-REC 거래 시 발생하는 수익금에서 상계 처리할 예정이며, 잉여 수익금 발생 시 가구별 배분 가능
 - 도 협약기관에서 G-REC 거래 수탁, 태양광 발전량에 대해 G-REC 발급
- 참여혜택 : 태양광 발전량 확인 편의 제공, G-REC 잉여수익 발생 시 배분
- 협조 요청사항
 - 신청자(도민) : 참여를 희망하시는 경우, 사업 참여 동의서를 제출
 - 참여 시공기업 : 본 시범사업의 진행에 협조하여야 합니다. (신청자가 참여를 희망할 경우, RTU 부착을 위한 함체를 설치하여야 함)